

조 례 안 예 고

통영시의회 공고 제 2022-12호

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통영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7일

통 영 시 의 회 의 장



1. 자치법규명: 「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안이유

가.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된 안건 심의 및 재심의 처리기한을 각각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된 안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,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안전 처리기한 변경. (안 제66조 제4항 및 제5항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: 2023년 4월 13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우편, 서면, 팩스 등

다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(2)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의견서 제출처: 통영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장)

- (1) 주 소: 우)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(무전동, 통영시의회)
- (2) 전화번호: 055-650-2943(Fax. 055-650-2999)

통영시 조례 제 호

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4항 및 제5항 중 “60일”을 각각 “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의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심의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6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<u>60일</u>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<u>60일</u>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.</p> <p>⑥ (생 략)</p>	<p>제66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 <u>30일</u> ----- ----- --.</p> <p>⑤ ----- ----- <u>3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14조(운영 세칙)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14조(운영세칙)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,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한다.

1. 위원의 자격 및 임명·위촉·해촉(解囑) 기준
2. 회의 소집 방법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·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
4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
5.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
6.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
7.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□ 통영시 도시계획조례

제6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원안 수용: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

2. 조건부 수용: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

3. 수정 수용: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

4. 재심의 결정: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

5. 부결: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

④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.

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.